규제영향분석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자	이름	김영대
	담당부서(과)	가계금융과		직급	행정전문관
	국장	박광		연락처	02-2100-2514
	과장	권유이		이메일	gypsoph@korea.kr

2021. 05. 03.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		
	2.규제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3.위임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5.03 ~ 2021.06.1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그간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		
	7.규제내용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현행 최대 4% 이내에서 최대 3% 이내로 하향 조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모집인	대부업체 총 8,455개('20.6말), 저축은행 79개('20말), 여신전문금융회사 131개('20말), 저축은행·여전사 대출모집인 6,458명('20말)
		이해관계자	금융소비자	대부업 이용자 157.5만명('20.6말), 대출모집인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이용자 69.8만명('20년 1년간)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용자 21.2만명('20년 1년간)
		관련기관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그간 최고금리는 '12년 39.0%에서 '21.7월 20.0%까지 인하되어 왔으나, 중개수수료 상한은 '13년 5%로 도입된 이후 한차례만 인하되어 4%를 유지하고 있던 점을 감안,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함으로써 금융이용자의 금융 비용을 경감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10,600	110,600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금융이용자 영향	
		주요내용	금융이용자 금리부담 경감 및 한계차주 대출 축소 방지 효과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법률상의 일몰 설정에 따름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10,600	110,60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생략)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5백만원 이하	100분의 4
5백만원 초과	2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5백만원 이하	100분의 3
5백만원 초과	1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배경) 소비자에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ICT기술 발달·비대면 영업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지대**(rent) **성격**의 **비용은 절감**하고 **경쟁을 강화** (예 :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 그간 금융권은 비대면 영업의 대폭적인 증가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 혁신·경쟁 유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

* 연체가산이자율 규제, 중도상환수수료 수준·부과방식 인하 및 대환대출플랫폼 출범, 오픈뱅킹 등

○ 특히, **최고금리 인하 시행**(24%→ 20%, 21.7.7)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중간비용을 절감하여 **취약계층의 탈락을 최대한 예방**할 필요

□ **(경과)** 대출중개시장에서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 수취**에 따른 금융이용부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금융이용자에의 금융비용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3.6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규제(5%)**를 **도입**

○ 다만, 그간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1)](39%→20%)되어온데 반해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2)](5%→4%)는 한 차례에 그침에 따라, 대출금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3)]

1) 최고금리 인하: ('13.6 당시) 39% → ('14.4) 34.9% → ('16.3) 27.9% → ('18.2) 24% → ('21.7) 20% 시행 예정

2)

'13.6월 도입시	5백만원 이하	5백만원~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대부금액의) **5%**	25만원 + 5백만원 초과분의 **4%**	45만원 + 1천만원 초과분의 **3%**
'18.11월 개정 ('19.2 시행)	5백만원 이하	5백만원 초과	
	(대부금액의) **4%**	20만원 + 5백만원 초과분의 **3%**	

3) ('13.6 도입시) 최고금리 39% 기준, 중개수수료 5% 도입(약 **12.8% 구성**)
('18.11~현재) 최고금리 24% 기준, 중개수수료 4% 적용(약 **16.7% 구성**)
('21.7 예정) 최고금리 20% 적용시, 중개수수료 4%는 약 **20% 구성 예정**

□ **(필요성)** 그간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 수익 확대**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체계를 적정수준으로 정비할 필요

○ 그간 최고금리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수준**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 중개모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

(i)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과도한 마케팅 광고** 등에 따른 **과잉 모집행위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화** 되어온 측면이 있고,

> ❶ **[광고규제 강화]** 대부중개업자 등의 경제적 유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잉 광고 문제가 대두되며 관련 광고 규제가 지속 강화되어온 측면
> -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 자유감축,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 표기·불건전문구 금지 등 추가규제 도입('17.7월, 대부업광고규제 강화방안)
> - 현재도 TV광고 규제 강화, 스팸광고 및 허위·사칭광고 제재강화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
>
> ❷ **[과도한 광고 피해사례] 대출모집인 광고 관련 피해사례**
> ▸ A 저축은행에서 12%대의 금리로 2,500만원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자영업자 김모씨는 2,000만원의 추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B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됨
> ▸ 김모씨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보냈더니 10% 초반대의 금리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면서, B 저축은행의 다른 대출상품은 금리가 18% 정도 되지만 5,000만원의 대출을 6개월만 이용하면 B 저축은행의 우수 고객 등급을 받게되어, 나중에는 12%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받음.
> ▸ 급전이 필요했던 김모씨는 A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해약하고, B 저축은행에서 총 5,000만원 대출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출이 저금리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며, 고금리 대출로 인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ii) 대부업체 등이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저신용자의 대출위험을 흡수하여 대출을 유지**하는데 **제약 요소로 작용**

○ 가계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여전히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중개업체 수 및 관련 이익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대출모집인 수('19→'20) : (저축은행) 3,863 → 3.954명 (여전사) 2,297 → 2,504명
대부중개업자수(겸업포함) : ('19말) 2,463개 → ('20.6말) 2,586개
* 고금리업권(저축·여전·대부) 총 대부중개수수료(억원) : ('19) 5,536 → ('20) 6,972

- '19.2월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되어 진입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①**"경쟁"의 여지가 있는 시장**이라는 신호이자 ②진입에 **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반증

- 실제로 중개영업 행태 측면에서도 **비용절감이 가능한 광고 등을 통한 모집 활동**이 많고, 대출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신심사기능 등**의 역할은 제한적인 상황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중개수수료 상한을 현행 유지
	내용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해당 대부금액의 최대 **4%** 범위 이내로 제한
규제대안1	대안명	중개수수료 상한을 **1%p** 하향 조정
	내용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해당 대부금액의 최대 **3%** 범위 이내로 제한
규제대안2	대안명	중개수수료 상한을 **1.5%p** 대폭 하향 조정
	내용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해당 대부금액의 최대 **2.5%** 범위 이내로 제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대부중개시장 변동 없음	그간 규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높은 수수료로 서민의 금리 부담 지속
규제대안1	그간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비용 경감을 유도하되,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	대부중개시장에 변동 영향
규제대안2	금융비용의 충분한 경감	대부중개시장의 급격한 악화로 중개 및 금융회사 영업의 과도한 위축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관련업계와 수차례에 걸쳐 TF 활동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고금리업권(대부업,저축은행 등)의 지속적인 저신용자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지원 필요	의견 검토
대부협회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 할 필요	의견 검토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 대출모집인에 지급되는 중개수수료 인하 필요	의견 검토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중개수수료 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등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과도한 시장 영향이 없는 대안**을 선택

○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는 저축은행·여전사 등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의 영업비용 경감**을 통해 **대출자의 금융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정성적, 장기적 효과)

1 **(현행 유지안)** 그간 **최고금리 인하*****(39%→20%),** 최근 중개영업 수익 증가 등 **규제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 중개수수료 상한 도입('13) 이후 **최고금리**는 39%→20%로 약 **49%** 낮아졌지만, **중개수수료 상한**은 5%→4%로 **25%** 낮아지는데 그침

2 **(1안 : 1%p 인하)** 최고금리 인하* 등 그간의 **규제 변화를 반영**하면서 **중개영업에 따른 과도한 수익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대비 **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4%/3% → 3%/2%)**

* ('13) 39% → ('14.4) 34.9% → ('16.3) 27.9% → ('18.2) 24% → ('21.7) 20%

○ **(영향)** 중개수수료 상한의 **1%p 인하 가정**시, 고금리업권 대출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 시장**의 수익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 '20년 기준 수수료 수익 6,972억원 중 15.9%에 해당하는 **1,106억원 내외의 수익 감소 예상**(상세내역 별첨)

○ **(평가)** 해당 수익 감소분은 고금리업권 중개시장의 **최근 1년 수수료 수익 증가분**(1,438억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시장의 성장세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 고금리업권 **총 대출중개수수료**('19년 대비 '20년 약 **1,438억원 증가**)

	'19년	**'20년**	**'19년 대비**
저축은행	3,002억원	4,084억원	+ 1,082억원 (+36%)
여전사	1,259억원	1,674억원	+ 415억원 (+33%)
대부업자	1,275억원	1,214억원*	△ 61억원 (△ 5%)

* 대부업자('20년)는 현재 '20.상반기 기준 통계(607억원)만 있는 점을 감안, 2배로 계산

③ **(2안 : 1.5%p 인하)** 그간 중개수수료가 **금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제도 도입 당시 수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기존 대비 **중개수수료 상한을 1.5%p 인하(4%/3% → 2.5%/1.5%)**

* 도입시('13.6) 최고금리 39% 기준, 중개수수료 상한 5%(약 **12.8% 비중**)
→ '21.7월 최고금리 20% 기준, 현행 중개수수료 4%는 20% 비중으로 매우 높음
→ **상한을 2.5%로 1.5%p 인하할 경우, 12.5% 수준으로 도입당시와 유사**

○ **(영향)** 중개수수료의 1.5%p 인하 가정시, 사실상 **모든(가계·기업, 신용·담보)고금리업권 대출 시장**에서의 **중개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 '20년 기준 수수료 수익 6,972억원의 30.7%에 해당하는 **2,140억원**의 수익 감소 예상(상세내역 별첨)

○ **(평가)** 이 경우 **대출모집· 대부중개업 수익구조**의 **급격한 악화**에 따른 중개영업의 과도한 위축 등 **부작용 발생 우려**

- 해당 수준의 중개수수료 수익 감소시 **대출 중개 시장의 큰 폭 위축**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으로 **시장 충격이 예상**되고,

- 대출모집 및 대부중개영업의 과도한 감소가 있을시에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필요한 영업 위축**도 우려됨

⇨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제 취지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규제대안1(1%p 조정)이 타당**

3. 규제목표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 등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그간 규제 환경 변화,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거려하여 대부영업시의 수수료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출 이용자의 금융비용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비례적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중개수수료 상한을 1%p 하향 조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중개수수료 상한을 1%p 하향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10,600	110,60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10,600	110,600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2: 중개수수료 상한을 1.5%p 하향 조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2 : 중개수수료 상한을 1.5%p 하향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14,000	214,00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14,000	214,000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규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 제19조제2항) 부과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높음

- 또한, 대부중개 행위 전체에 적용되므로 **형평성 문제도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번 규제사항은 **이미 운영중인 규제를 조정**하는 것에 불과해 추가적인 행정 및 인력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감독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의 높은 금리부담을 감안**하여, 관계기관·법무부 협의 및 당정협의를 거쳐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발표** (24%→20%, '20.11월)하고, 시행령 개정을 완료**(7.7일 시행 예정)**

□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지속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21.4.1일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

*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21.4.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❷)

⇨ 향후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등을 진행할 계획

2. 향후 평가계획

□ 중개수수료 인하 시행 이후 **시장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정 여부 등을 판단

3. 종합결론

□ 그간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업의 수익 확대 추이 등 **규제환경의 변화**와 중개수수료 인하에 따른 **시장의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을 현행 대비 **최대 1%인하 조정**하려는 것으로,

○ 규제의 조정 필요성, 저**신용 서민 등 대출자의 금융비용 경감**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추진이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중개수수료 상한을 1%p 하향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10,600	110,60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10,600	110,600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금융이용자 금리부담 경감 및 한계차주 대출 축소 방지 효과

규제대안2 : 중개수수료 상한을 1.5%p 하향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14,000	214,00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14,000	214,000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중개수수료 상한을 1%p 하향 조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
활동제목	중개수수료 변동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110,600,000,00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 중개금액 X 수수료율 인하분(110,600,000,000)
근거설명	□ 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4%에서 최대 3%로 1%p 하향 조정'할 경우, 그간 중개업자 등이 취급했던 **전체 대출 중** 통상 3% 내외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가계신용대출이 영향 대상** * (5백만원 이하) 현행 4% → 3% (5백만원 초과분) 현행 3% → 2% ○ 다만, 현재도 중개수수료를 **상한까지는 받고 있지 않는 만큼**, 상한을 1%p 인하하더라도 **실제 수수료 인하폭은 1%p보다 낮을 전망** * 가계신용대출 평균 중개수수료율 (저축은행) 3.03% (여전사) 2.83% ○ 이를 감안할 경우, '20년 전체 중개수수료 수익 6,972억원의 15.9%에 해당하는 **1,106억원의 감소**가 예상

< 대부중개수수료율 1%p 인하시 영향(개, 억원, %)>

구분(억원)	중개금액*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감소 효과	
	전체	가계신용	전체(A)	가계신용	감소액(B)	감소율(B/A)
저축은행	148,472	82,628	4,084 (2.75%)	2,504 (3.03%)	620	15.2%
여전사	71,003	46,800	1,674 (2.36%)	1,323 (2.83%)	279	16.6%
대부업계	53,294	20,671	1,214 (2.28%)	678 (3.28%)	207	17.1%
계	272,769	150,099	**6,972**	**4,505**	**1,106**	**15.9%**

* 저축은행·여전사는 '20년 실적, 대부업계는 '20년 상반기 실적에 2배를 곱한 금액 기준

** 관련 계산 근거

① (저축은행) '20년 가계신용 평균 대출금액 건당 1,800만원, 이 경우 수수료 상한은 3.28%임에도 평균 수수료율이 3.03%로 약 0.25%p의 여유가 있는 점 감안시, 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에 따라 실제 중개수수료를 **0.75%p 인하**했다고 가정

② (여전) '20년 가계신용 평균 대출금액 건당 2,300만원, 이 경우 수수료 상한은 3.21%임에도 평균 수수료율이 2.83%로 약 0.4%p의 여유가 있는 점 감안시, 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에 따라 실제 중개수수료를 **0.6%p 인하**했다고 가정

③ (대부) 대부업계는 가계/기업, 신용/담보로 구분된 통계가 부존재함에 따라, 현재 평균수수료율 3% 이상 업체를 가계신용대출 주력 중개업체로 가정하고 해당 업체가 중개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일괄 1%p 인하**했다고 가정

	□ 다만, 실제로 중개수수료 상한 이상을 받고 있는 대출건만을 구분하여 적용할 경우 **실제 영향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 아울러 최근 급격한 이익 증가를 감안할 때, 동 시나리오에 따른 **수익 감소분**은 지난 **1년간의 수수료 수익 증가분**(1,438억원) **수준에도 못미치는 규모** * 고금리업권 **총 대출중개수수료**('19년 대비 '20년 약 **1,438억원 증가**)

	'19년	'20년	'19년 대비
저축은행	3,002억원	4,084억원	+ 1,082억원 (+36%)
여전사	1,259억원	1,674억원	+ 415억원 (+33%)
대부업자*	1,275억원	1,214억원	△ 61억원 (△ 5%)

* 대부업자('20년)는 '20.상반기 기준 통계에 2배를 곱한 금액

□ 직접편익

(정량)세분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활동제목	중개수수료 변동
편익항목	비용부담 완화
비용	110,600,000,00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 중개금액 X 수수료율 변동(110,600,000,000)
근거설명	1) 대부영업시 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에 따라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서 **중개업자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 비용 1,106억원 감소(편익 증가)** 2) 한편, 중개수수료 인하는 부담 완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량적인 영업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이용자의 금리부담 등 경감효과***로도 추가적으로 이어져 **금융회사의 영업확대 및 사회적 순편익 유발** * ① 대출 이용자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 ②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저신용자(한계차주)가 (금융회사의 원가 절감에 따라) 대출을 받을 가능성 증가 또는 대출축소가 방지되는 효과 3) **대부중개업자** 등도 ①중개수수료 인하로 직접적으로는 수익이 감소하겠지만, ②최고금리 인하와 관련 **한계차주의 대출 축소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편익을 누리게 됨

②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금융이용자
활동제목	중개수수료 변동
편익항목	금리 인하 및 금융이용 가능성 확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중개수수료 인하는 금융회사의 정량적인 영업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이용자의 금리부담 등 경감효과***로도 추가적으로 이어져 **사회적 순편익 유발** * ① 대출 이용자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 ②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저신용자(한계차주)가 (금융회사의 원가 절감에 따라) 대출을 받을 가능성 증가 또는 대출축소가 방지되는 효과

③정부 :

□ 편익

(정성)세분류	정부
활동제목	중개수수료 변동
편익항목	금융시장 안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에 따라, **한계차주 등 저신용, 저소득 금융이용자의 금융이용 애로가 해소되어** 사회적 안전망 확충 가능 ○ 아울러, 저신용, 저소득 금융이용자의 이용이 높은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서민금융(햇살론 등)을 대체**함에 따라, **관련 예산 등의 절약도 가능**

<규제대안2 : 중개수수료 상한을 1.5%p 하향 조정>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
활동제목	중개수수료 변동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214,000,000,00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 중개금액 X 수수료율 인하분(214,000,000,000)
근거설명	□ 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4%에서 최대 2.5%로 1.5%p 하향 조정*할 경우, 그간 중개업자 등이 취급했던 **전체 대출 중** ❶ 통상 3% 내외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가계신용대출 및** ❷ 2~3%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가계담보대출이 영향 대상** * (5백만원 이하) 현행 4% → 2.5% (5백만원 초과분) 현행 3% → 1.5% ○ 다만, 현재도 중개수수료를 **상한까지는 받고 있지 않는 만큼**, 상한을 1.5%p 인하하더라도 **실제 수수료 인하폭은 1.5%p보다 낮을 전망** * 가계신용대출 평균 중개수수료율 (저축은행) 3.03% (여전사) 2.83% * 가계담보대출 평균 중개수수료율 (저축은행) 2.80% (여전사) 1.37% ○ 이를 감안할 경우, '20년 전체 중개수수료 수익 6,972억원의 **30.7%**에 해당하는 **2,140억원의 감소**가 예상 < 대부중개수수료율 1.5%p 인하시 영향(개, 억원, %)>

구분 (억원)	중개금액*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감소 효과	
	전체	가계 신용	가계 담보	전체 (A)	가계 신용	가계 담보	감소액 (B)	감소율 (B/A)
저축은행	148,472	82,628	28,478	4,084 (2.75%)	2,504 (3.03%)	796 (2.80%)	1175	28.8%
여전사	71,003	46,800	12,690	1,674 (2.36%)	1,323 (2.83%)	174 (1.37%)	578	34.5%
대부업계	53,294	20,671	15,237	1,214 (2.28%)	678 (3.28%)	383 (2.51%)	386	31.8%
계	272,769	150,099	56,405	**6,972**	**4,505**	**1353**	**2,140**	**30.7%**

* 저축은행·여전사는 '20년 실적, 대부업계는 '20년 상반기 실적에 2배를 곱한 금액 기준

** 관련 계산 근거

① (저축은행) ❶가계신용대출 중개수수료는 <대안1> 대비 추가 0.5%p 인하(총 **1.25%p**) 가정하고, ❷<대안1>에서 상정하지 않은 가계담보는 **0.5%p 인하**했다고 가정

② (여전) ❶가계신용대출 중개수수료는 <대안1> 대비 추가 0.5%p 인하(총 **1.1%p**) 가정하고, ❷<대안1>에서 상정하지 않은 가계담보는 **0.5%p 인하**했다고 가정

③ (대부) 대부업계는 가계/기업, 신용/담보로 구분된 통계가 부존재함에 따라, 현재 평균수수료율 3% 이상/3~2% 업체를 가계신용/담보대출 주력 중개업체로 가정하고 해당 업체가 중개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일괄 1.5%p/0.5%p 인하**했다고 가정

□ 아울러 **1.5%p 인하시**에는 현재 가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기업대출(신용/담보)**에도 일부 **추가적인 영향이 우려**됨

	□ 해당 수준의 중개수수료 수익 감소시, **대부중개업 시장의 큰 폭 위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장 충격이 예상**되며, ○ 대출모집·대부중개업의 필요 이상 과도한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대부업자의 영업까지 크게 위축**되는 **추가적인 부작용**도 우려됨

□ 직접편익

(정량)세분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활동제목	중개수수료 변동
편익항목	비용부담 완화
비용	214,000,000,00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 중개금액 X 수수료율 변동(214,000,000,000)
근거설명	□ 대부영업시 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에 따라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서 중개업자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 비용 2,140억원 감소(편익 증가) ※ 규제대안1(금융회사의 영업비용 감소 및 이용자의 편익 증가 효과)과는 달리, 전반적인 시장축소로 이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어 기타 편익 증가는 제한적